

● **환경부고시 제2021-303호**

2022년도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반영계수

「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의6제1항에 따라 전기·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반영계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1년 12월 29일

환경부장관

반영계수는 0.25로 한다.